감사행정실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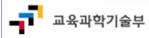
감사사례



1) 공금횡령

- o 00대학교 일반회계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000는 동 대학교 정부보관금 운영계좌에서 2006. 5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걸쳐 정부보관금 13,000천원을 무단 인출하여 사용하다 2006. 12월 9,900천원을 보전하는 등 9,900천원을 유용하고 3,100천원을 횡령 <파면요구, 검찰고발>
- o 00대학교에서는 학생 임대아파트 회계와 각종 학생잡부금 등의 수입 및 지출내역의 확인을 불가능하게 관리하였고, 교학처장(계약관, 학생잡부금 수입.지출 총괄)은 본인의 인감을 업무담당자에게 맡겨 처리케 하는 등 학생잡부금을 업무담당자가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도록 방치하여 업무담당자가 297,557천원 횡령, 총학생회장 또한 기성회 행사지원금 22,000천원을 횡령

<파면, 경징계, 검찰고발>





2) 수의계약 부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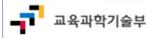
o 00학교는 강당 접의자 300개 구입을 위해 2007. 3. 21. 다움퍼니처 000와 7,260천원에 계약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 하였으며, 2007. 4. 30.부터 5. 1. 까지 3회에 걸쳐 6,435천원 상당의 물품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경고>

3) 부외계좌 운영 부적정

o 00대학교는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교재를 공동구매하고 남은 교재판매 수수료 123,197,333원을 교비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대학 명의의 별도 부외계좌로 운영하는 등 32 개 계좌 1,503,085,245원을 부외계좌로 관리하여 실제 보유 자금을 결산서에 정확하게 반 영하지 아니하고 결산

<경고>



M 산.회계관리

감사사례

4) 소관사무 담당자 수당지급 부적정

o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각종 채용업무 담당자 15명에게 면접위원수당 등 지급(지급액:총 2,740천원) <주의, 회수>

5) 학교시설사용료 미세입 및 임의사용

o 00학교에서는 학교시설을 TEPS시험 및 한국사능력시험 고사장으로 임대하고 받은 시설사용료를 교비회계로 세입하지 않은 채, 일부는 직원 회식비(2,485천원)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용도(1,472천원)로 사용

<경징계, 회수>



- 6) 국고보조금 및 자체수입 기성회계 세입 미처리
 - o 00대학교에서는 국고 및 각종 보조금에 대하여 기성회회계 예산에 세입조치 하지 않고 부 외계좌로 관리(8개 국고 및 각종보조사업: 1,321,587천원, 예산 미계상: 38,050천원)
 - o 매 년도별 기성회회계 예산 집행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 예산 집행 <주의, 통보>
- 7) 각종 수당 부당 수령
 - o 00대학교에서는 부양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당하게 수령
 - 부양가족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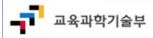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에 대한 수령 : 44명, 28,700천원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이중 수령 : 4명, 2,560천원

부양가족 사망자에 대한 수당 수령: 11명, 2,560천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해외파견시 동반출국 자녀 미신고로 인한 수령: 3명, 1,045천원 <주의, 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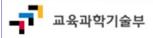
8)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o 00대학교에서는 같은 날짜, 같은 장소, 같은 목적으로 출장을 이중 신청하거나 출장기간이 겹치는 중복 출장에 대해 출장비를 과다하게 지급(국고, 기성회계, 산단)
 - 275명(662회), 30,797천원

<주의, 회수>

9) 물품관리 부적정

- o 00학교는 1999. 8.27. 구입한 장구(취득가 130천원)를 학생들의 행사연습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강원청소년교향악단에 무단반출(반출일 미상) 하는 등 총 15종 14,315천원 가액의 물품(악기)을 물품반출에 필요한 절차 없이 날짜 미상일에 반출<물품관리관 등 관련자 경고>
- o 00대학교에서는 노트북컴퓨터 및 디지털카메라 분실 등 휴대 가능 물품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7개과, 12개 품목에서 총 12개 물품(15,004천원)을 분실, 00학과 교수 000는 한국조세연구원 파견기간 중에 노트북컴퓨터 2대를 허가 없이 반출하는 등 8개과, 43점을 허가 없이 반출<주의, 변상>





10) 국유재산사용료 기성회 세입 부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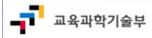
o 00대학교에서는 2007~2009회계연도 기간 동안 총 319회에 걸쳐 외부 기관 또는 단체에 국유재산인 운동장 등을 사용하게 하고 수납한 사용료 67,031천원을 국고에 세입처리하지 않고 기성회회계 세입으로 처리

<회수>

11) 법인카드 관리 부적정

- o 00기관에서는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지 아니하고 클린카드 의무 제한업종인 나이트 클럽, 노래방 등에서 집행하고 50만원 이상 집행건에 대한 접대 상대방 내역을 미기재
- 제한업종 집행 13건, 1,534천원
- 접대 상대방 미기재 48건, 38,941천원

<경고. 회수>





중점 점검사항

- > 연구비 관리의 적정성 여부
- 외부연구비 수행의 적정성 여부
- 산학협력단 운영의 적정성 여부
- 지적재산권 운영의 적정성 여부

- 국고보조금의 목적외 집행
- 기 발표된 연구논문으로 연구비 수령





- 외부기관연구비와 교내연구비를 중복 지원받은 후 외부기관 연구 과제 결과물을 교내연구비 결과물로 제출
- 제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하여 연구결과물로 제출
- ▶ 수당□업무추진비 등을 비법정 보직자 등에게 지급
- 연구결과물 미제출자에 대한 연구비 회수조치 미수행
- 연구비 목적 외 사용 : 단합 등의 이유로 유흥비로 집행
- 간접연구경비를 간접연구경비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 개인별연구보조비 심사평정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개인별 연구 보조비 지급





- 당해 연구와 무관한 의원면직교수, 국내외 장기파견중인 교수에게 연구비 지급
- 교원지급 연구비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등 원천징수 미 이행
- 연구비로 구입한 실험기자재와 비품 기관에 기부채납하지 않고 연구자가 소지 관리
- 개인명의 등록 특허에 대한 명의 환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적재산권관리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함
- 연구결과 보고서 미제출
- 연구결과 생산된 발생물(시제품 등), 구입기기를 소속기관에 미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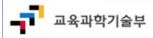
1) 외부 연구과제 집행 부당

- o 00대학교에서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용역비를 산단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채, 부당하 게 집행 19개 과제, 881,404천원 집행
- o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연구원들이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연구비를 사적으로 집행하는 등 허위 정산 00대학교 부교수 000: 11,012천원, 전 연구원 000: 5,091천원
- o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중앙관리를 하지 않은 채, 집행근거 서류 없이 연구비를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총 연구비: 120,317,581원, 증빙자료 없는 지출액: 118,438,333원 <중징계, 경징계, 회수, 검찰고발 >

2) 교내 학술연구비 관리 부적정

o 00대학교에서는 교내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수들은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최장 3년2개월에서 최단 2개월이 경과하도록 연구결과물을 미제출 - 과제 지연제출자 18명

<경고, 주의,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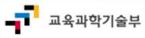


3) 동일연구과제로 연구비 중복수령

- o 00대학교 교수 000는 동일연구 과제로 교내학술연구비와 한국학술 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중복하여 수령·집행
- 교내연구비 8백만원, 연구기간 '08.7월~'09.6월
-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 : 360백만원, 연구기간 08.7월 ~ '10.6월
- く경고, 회수 >

4) 연구비 구입물품 관리 부적정

- o 00대학교에서는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 및 도서를 재산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운용
- 물품 242점, 도서 2.623권 등 592.577천원
- o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을 이직하면서 무단반출
 - 2건 16,980천원
 - <경고. 회수>





5) 지식재산권관리 부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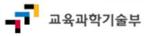
- o 00대학교에서는 직무발명한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인명의 등록 및 출원:특허보유: 8명(12건), 출원중: 7명(9건)
- o 기술이전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07~'10기간 중 22건 모두를 기술이전 계약 체결
 - : 이전료 137,100천원

<주의, 통보 >

6) 연구활동비 집행 부적정

- o 연구활동비 중 여비를 집행하면서 기내숙박 등을 확인하지 않고 초과 지급하였고, 해외여 행경비를 연구비에서 전액지원하고 있는데도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를 지급하는 등 이중 지급(8명, 12,015천원)
- o 출장증빙서류를 지출하지 않거나 회의비와 중복지급(105회, 5,590천원)
- o 연구비에서 전동칫솔 등 개인용도 물품 구입 (2명, 465천원)

<경고, 회수>





7) 연구비카드 발급 사용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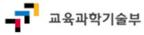
o 00대학교 교원 81명이 2010년도에 수행한 135개 연구과제(총 연구비 7,950,430천원) 중 연구비카드 사용률이 27%에 그침

< 통보 >

8) 연구물 차용 부당

- o 00대학교에서는 교수 000등 3명이 전임교원 승진을 위한 연구실적물 제출시 제자의 논문을 그대로 또는 요약하여 학회지에 등재하고, 동 연구실적물을 승진시에 사용
- o 00대학교는 석사과정 000가 학회지에 기 등재된 교원의 연구실적을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그대로 또는 요약 제출하여 석사학위논문을 청구하였음에도 학위 수여

<경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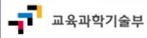
9) 연구보조원 인건비 부당사용

- o 00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000는 2010. 5. 1. 한국연구재단과 "경피신경 전기자극이 전립선 조직검사시 불안, 통증, 중재만족감 및 베타 엔돌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맺고 연구 책임자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 -동 연구과제 연구보조원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00대학 간호과 재학생 000 및 00대학교 간호과 재학생 000로부터 인건비 지급통장, 비밀번호를 받아 위 직접 관리하고 감사일현재까지 지급된 7개월분('10.5월~11월)의 인건비 5,600천원 중 약 4개월분의 인건비 (3,450천원, 세금 포함)만을 직접 인출하여 현찰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2,150천원은 본인의 통장 등으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 <경징계, 회수 >

10) 특성화사업비 집행 부당

o 00대학은 2006년부터 2007년도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을 진행하면서 부교수 000 등 4명은 자신의 저서를 그대로 편집하거나 기 수행된 사업의 교재를 재 편집하고 새로이 개발된 것 처럼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22.000천원을 부당 집행

< 관련자 징계, 회수, 통보 >





중점 점검사항

- > 교육시설사업의 합리적 계획수립 및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
- 공사계약 관련 투명성 · 공정성과 회계질서, 공사집행 과정의 철저한 감리 · 감독 이행 및 적절한 설계변경,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내구연한 증대 및 안전관리 등

-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처리, 통합발주, 무면허업체와 계약
- ▶ 설계변경사항을 감액 조정없이 준공, 공사비 중복계상 등
- 안전관리비 계상 후 사용내역 미정산





- > 준공 후 하자담보기간 내 하자검사 미 실시
- ▶ 조경수 등 누락 시공
- ▶ 지체상금 미 징구
-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분쟁 야기 : 임의 공사(설계변경 미 실시)
- ▶ 준공절차(검사조서 작성 등) 없이 준공금 지출
- ▶ 기타: 예정가격 과다 책정, 분할 수의계약
- ▶ 실험실습기자재 관련 : 활용, 관리 등





- 1) 자체발주 소액공사 부풀리기
- o 00초등학교 교장 000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000업체와 "운동장 계단 캐노 피 설치공사"를 20,000천원에 계약하는 등 총 사업비 65,969천원을 4차례에 걸쳐 시공업 체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결정, 3개 무면허업체와 계약하였으며, 공사비를 부풀려 과다 계 상 및 준공검사 부실로 7,365천원을 부당 지급
 - < 경징계, 변상 >
- o 00학교에서는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시공 과정에서 건물의 형태가 변경되었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채, 15,679천원을 부당지급
 - < 주의, 회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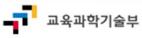
2) 공사 계약 부적정

- o 00대학교에서는 교내 소화전 급수관 라이닝공사 시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반려하였음에도 관련이 없는 수의계약 사유를 들어 수의계약으로 집행
- o 교내 급수노후배관 갱생공사 시 제한경쟁입찰 방법으로 집행하면서 전국에서 5개 업체만이 입찰참가 가능하도록 과도하게 제한하여 집행 < 경고 >

3) 공사감독 부적정

o 00대학교에서는 교내소화전 라이닝공사를 실시하면서 1차 라이닝(0.4mm) 후 시공하여야 하는 2차 라이닝(0.3mm)을 시공하지 않아 적정 두께인 미확보0.7mm), 횡주관에 대한 라이 닝 부실시공으로 배관 하부에 9~10mm의 도료 응고

< 재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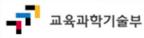
4) 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 관리 부적정

- o 00대학교에서는 공동실험실습관 보유기자재 63점(6,660백만원 상당) 중 "단백질 분리 정제장치"등 35점(2,801백만원)의 기자재를 '07년 이후 미활용 방치
- o "고공기상 관측장비(1387백만원)" 등 4개(400백만원)의 고가기자재를 구매 후 미활용 방치(00공학과 000 등 3명)
- o 수산동물병성감정 실시시관 지정을 받기 위한 고가 기자재 구매후 미활용 방치 < 경고 >

5) 시설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o 00대학교는 "공장동 외 3개동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의 하자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옥 상방수와 외벽마감 부위에 방수재 들뜸, 외벽균열 및 백태 등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하자 검사(3회)서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허위 보고(하자발생액: 15,000천원 상당)

<주의, 재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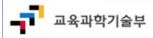


6) 시설공사 각종 경비 미정산

- o 국민연금보험료 미정산
 - "학생회관 및 기타건물 옥상 방수공사"외 3개공사 미정산 : 3.670천원
- o 국민건강보험료 미정산
 - "본관 총장실 내부개선공사"외 3개 공사 미정산 : 2,048천원
- o 환경보전비 미정산
 - "중앙공급실 기계실 및 공동구 배관 교체공사"외 4개 공사 미정산 : 1,540천원
 - < 주의, 회수 >

7) 교내 조경공사 부적정

o 00대학교는 "교내주변 조경수 식재 공사"시(공사기간:'10. 7.22~7.28) 기준에 미달되게 식재하였는데도 검사를 소홀히 하여 공사비 7,522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2개업체에 대해 총 10,908천원을 과다 지급 <경고, 회수>





- 8) 물품의 구매, 용역, 시설공사 부적정
 - o 00대학교에서는 2007. 2~2010. 7 기간동안 물품의 구매.용역 및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 결(44건, 총 516억)
 - 수의계약 대상: 전문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밖의 공사 8천만 원,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5천만원이하
 - o 전기.통신.소방공사 미분리 발주(4건)
 - o 무자격업체와 공사계약(2건)

<경고>